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8호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위치 및 면적

- 가.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일대(16,639㎡)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은평구 진관내동 76	답	526
은평구 진관내동 77	답	5,617
은평구 진관내동 78	답	5,385
은평구 진관내동 129-3	답	4,192
은평구 진관내동 130	답	919

- 나. 강동구 암사동 624-1 일대(102,497㎡)
○암사동 한강습지 직각좌표

번호	X	Y
①	210456	449557
②	210566	449571
③	210589	449538
④	210806	450226
⑤	210697	450353

※ 좌표 관독기준

- 투영원점 : 중부원점(동경 127도, 북위 48도)
- 도법 : 직각좌표(TM : Transverse Mercater)

- 독취지형도 : 축적 1/1000, 도엽명 : 서울

2. 지정의 필요성

가.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

이 지역은 주변의 산림지생태계와 대상지 내의 습지생태계가 만나는 계곡부로 지하수위가 높아 골풀, 갈대, 부들, 물억새, 붓꽃, 물봉선, 줄방제비꽃, 버드나무가 어우러져 습지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 환경부 보호종인 말뚝가리, 서울시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박새, 찌꼬리 등 다수 출현하고 곤충류, 양서류등이 다수 조사되는 등 서울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습지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서울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나. 강동구 암사동 한강습지

강동구 암사동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안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 쥐방울덩굴과 애기부들, 가래, 질경이택사, 줄, 골풀, 질경이택사, 도루박이, 부처꽃, 갈대, 참억새, 버드나무 등이 식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323호인 새매와 황조롱이, 환경부보호종인 말뚝가리, 서울시보호종인 제비 등 다양한 종류의 조류도 관찰되고 있는 하천습지이므로 서울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3. 금지행위 및 출입제한

가. 금지되는 행위

- 생태계보전지역내의 야생동·식물을 포획, 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 덧, 울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하는 행위
- 생태계보전지역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채취·수면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
- 나. 출입의 제한 및 예외
-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등은 제외
4.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가. 금지행위 위반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나. 출입제한 위반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6. 기타
- 상가지역(진관내동 습지 및 암사동 한강습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녹색서울환경방(<http://env.seoul.go.kr>)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 6321-4091) 또는 녹색서울환경방(<http://env.seoul.go.kr>) 시민의견 수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및보유자인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인정 심의에 앞서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명칭	기능보유자			지정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단청장	양용호	491211-1*****	서울 광진구 구의동 45-6 엘지그린빌라 301호	전통단청의 재현과 복원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보존 할 가치가 있음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3707-9431 ~5, FAX 3707-54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6호

망월천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685호(2000. 9.25)로 지방2급하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69호(2000.12.30)로 하천정비기본계획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8호(2001. 2. 1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9호(2001.10.5), 제2002-292호(2002.7.10)로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68(2002.10.15)로 정정고시된 망월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망월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